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47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박성민 · 정동만 · 구자근
서천호 · 박덕흠 · 이양수
고동진 · 최수진 · 조지연
나경원 의원(10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대전환(AI)을 통한 세계 AI 3강 도약이 국가적 정책 방향으로 설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과 확산을 촉진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AI 모델 개발, 특허, 투자, 인재 확보 등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자사 특성에 부합하는 AI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업종과 경영 형태가 다양한 중소기업은 맞춤형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데이터 확보·활용과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합법적 복제·전송 요건화 등 데이터 관련 특례, 신산업 영역의 갈등 규제를 숙의로 조정하는 규제배심원제, AI 활용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혁신허브 등 중소기업 중심의 특화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중소기업등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중소기업의 현장에 맞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특성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맞춤형 AI 도입 지원, 금융·인력 지원, 규제 개선, 지역 혁신허브 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별도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체계와 혁신 생태계를 법률로 정비하고, 특화 AI 개발 지원, 소상공인 활용 지원, 기금·모태펀드의 AI 분야 활용 근거, 오픈소스 협업 생태계 구축, 데이터 품질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규제개선 및 규제배심원단 운영, 지역 혁신허브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리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업무영역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AI 도입 활용 사업,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확보·품질향상, 숙련기술 데이터화,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을 지원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지원, 규제개선 절차, 규제배심원단 설치·운영 및 규제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사.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창업대학원 및 혁신허브 지정·운영,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 아. 공공데이터 개방 및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 규정을 두고, 업무 위임·위탁, 보고·검사 근거를 마련하며, 전담기관 임직원, 규제배심원단, 혁신허브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

9조부터 제33조까지).

자.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업무 영역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술”이란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6. “인공지능 활용 목적 중소기업 데이터”(이하 “기업데이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이 예측·최적화·이상탐지·자동화·추천·생성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업무처리·제품·연구개발 및 이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수집·가공·보관·이용·공유하는 모든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합성데이터”란 대규모 데이터의 생성, 개인 정보보호, 인공지능 시스템의 효율적인 훈련 등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등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의 보급 활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또는 이용자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 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중소기업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보급 및 기업데이터 확보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활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향 및 지원정책 등의 내용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의 확보) 중소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

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체계

제8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사업 지원
 3.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클러스터 구축 지원
 5.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관련 국제협력 및 판로개척·해외진출 지원
 6. 제14조에 따른 기업데이터 지원사업 운영
 7. 제15조에 따른 숙련기술 데이터화 지원사업 운영
 8. 제17조에 따른 규제준수 지원사업
 9.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과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공지능 도입·활용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과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인공지능 도입·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인공지능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3. 산·학·연 공동 실증 및 기술 혁신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판로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도입·활용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금융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및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모태펀드 출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③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력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 제10조 또는 제35조의5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인공지능 중소기업에게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3 또는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관련단체) ① 인공지능기술 또는 융합서비스 등의 이용 촉진·확산 등을 통한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 중소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등의 활용 촉진 및 확산
2. 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관련 자율규제 조사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제도 개선 조사 및 정책건의
4.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기업데이터 이용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6. 인공지능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7.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육성 관련 조사 및 정책건의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제2

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공지능 데이터의 확보 및 활용

제14조(기업데이터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자산 또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자산 또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에 관한 현황 분석 및 평가
2. 기업데이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기업데이터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데이터를 연합학습(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모으지 않고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 또는 학습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이나 합성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데이터 생산·수집·가공·분석·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현장 노하우 및 작업지식 등(이하 “숙련기술 등”이라 한다)의 데이터화를 통한 보존과 전승,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숙련기술 등의 수집, 데이터화 및 구조화 지원
2. 데이터화된 숙련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반 분석, 학습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지원
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숙련기술 등의 효율적인 전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인공지능 기반의 작업 지능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및 인공지능 기반의 보존과 전승, 고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공공데이터의 개방 촉진) ①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훈련 및 학습 목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의 제공을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중소기업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인공지능 데이터 규제 관련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거부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적, 법률적 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고를 불수용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내용과 불수용 사유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중소기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인공지능 개발 및 도입·활용을 위한 규제 대응

제17조(규제준수를 위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함에 있어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에 따른 규제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등 지원
2. 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및 전문 컨설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의 개발과 도입·활용에 따른 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공지능의 개발 및 도입·활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회의 심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

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규제배심원단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또는 도입·활용에 관련된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규제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모델개발 또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배심원단(이하 “규제배심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
- ② 규제배심원단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규제배심원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또는 확산에 관련된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개선 권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배심원단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배심원단의 권고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수용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내용과 불수용 사유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지역 인공지능 전환 촉진

제22조(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2.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필요한 비용 및 인프라
3.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역량 강화
4. 인공지능 활용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지역 전략산업 융합 및 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 전략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전략산업에 적합한 인공지능 융합 모델 발굴 및 개발
2. 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동기술개발·생산 또는 마케팅 지원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제25조 (지역 인공지능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하여 컴퓨팅 인프라 공동 활용, 테스트 환경 제공 등을 지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지역 인공지능 창업대학원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 비수도권 소재 인공지능 분야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이 연합하여 물적·인적 자원 공유 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의 지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이하 “혁신허브”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지역에 혁신허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혁신허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혁신허브 지정을 승인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지원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내 건축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건축물
4. 인공지능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투자가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내 건축물

③ 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인공지능 관련 중소기업의 집적과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원활한 인공지능 인프라 활용 지원
2.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육성 및 인수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제공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 내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클라우드, 각종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투자 펀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허브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허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허브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 입주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데이터활용 및 확보,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1조(위임 및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보고·검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혁신허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19조에 따른 규제배심원
3. 제27조에 따른 혁신허브의 임직원

제34조(과태료) ①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